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5다24819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강원도향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0. 6. 선고 2015나5580 판결

판결선고 2017. 9.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군정법령 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 관한 건, 1948. 5. 17. 제정 · 시행) 제2조는 '향교의 유지 경영을 위하여 조성된 일체 재산'을 향교재산이라 정하고, 같은 법령 제4조는 향교재산으로 도별로 향교재단을 설립하고 향교재산 중 부동산은 향교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하도록 정하며, 같은 법령 제13조는 본 법령 시행 전에 발생한 향교재산에 관한 권리는 적법한 것에 한하여 본 법령에 의한 향교재단이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교 내 건물의 부지 등 향교가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위 군정법령 시행 당시 국가나 다른 사람의 소유인 부동산은 위 제4조에 따라 향교재단의 소유로 귀속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 의하여 조사·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국(國)'이 강원 삼척군 삼척읍 교리 566 사사지(社寺地) 45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순차 분할되어 나온 토지로서 삼척향교의 대성전 등의 부지 또는 그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피고는 1979. 9. 18. 이 사건 부동산 중 교동 566 토지에 관하여, 1986. 7. 11.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토지들인 교동 566-1, 566-4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은 '국(國)'이 사정받은 토지로서, 군정법령 제194호 시행 당시 삼척향교의 대성전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 제4조에 의하여 향교재단에 귀속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군정법령 제194호 제4조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분할 전 부동산이 군정법령 제194호 제4조의 적용을 받아 향교재단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워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군정법령 제19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이기택